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물대 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보고·관리 의무 신설〉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51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12. 2.
3. 회 부 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 · 낙농 · 한우 · 양돈 · 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하지만 실습 과정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 ·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

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습장 대표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사고 관련 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현장실습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제6조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을 실시하는 농장 등의 대표자는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보고와 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7년 개교¹⁾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는 전문 농어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

1) 설립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하여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2021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음.

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립된 3년제 국립대학으로,²⁾ 작물·산림, 원예, 축산, 농수산업융합 등 4개 학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야간·계절·사이버 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음.³⁾

이 중 현장실습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6조,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제35조 및 이에 근거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⁴⁾에 따라 실시되는 2학년 교육과정으로서 국내외의 선진 농어업경영체에서 경영주의 지도를 받아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에는 201개 실습장에 41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한농대 장기현장실습제도 개요]

- (현황) 1997년 개교 이후 3년제 전문학사과정 중 2학년은 우수 농어장 도제식 현장교육을 통해 농어업 기술 습득
- (실습장) 농어업 경영체, 공공연구기관(농진청, 한식연, 식품클러스터 등)
 - * 국내 201개소(농어업경영체 173, 공공기관 28,) 414명
 - * 국외 2개국(미국, 일본) 6개소 10명
 - (기간/학점) 8개월(3~10월)/40학점, 4개 전공(한우, 낙농, 가금, 산업곤충)은 2개월(11~12월) 4학점 추가(선택)

2) 2010년부터 전공심화과정이 신설되어 4년제 대학교와 같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6조(교과 및 수업)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열·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평점은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4)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제35조(교육과정) ④ 현장실습은 국내·국외의 선진농장·어장 또는 농어업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서 영농·영어를 체험하면서 부과된 과제를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1. 현장실습은 단기 현장실습과 장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2. 단기 현장실습은 6주 이내로 하고, 장기현장실습은 8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2조(장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은 2학년 교육과정으로서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 농어업경영체 또는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본 대학 등(이하 '기관 등'으로 한다)에서 실습하는 것으로 한다.

- (실습방식) 실습생이 전공별로 지정된 실습장에서 거주하며 실습(1~2명)
- (실습수당) 실습생 보상(월 30만원), 현장교수 지도수당(월 35만원/1인) 지급
 - * 실습장에서 실습생에게 숙식 및 실습비(평균 80만원/월) 제공

□ 국내 실습 현황 : 총 8,551명(1998~2025년 누적)

전공 \ 연도	총계	1998~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습생 수(명)	8,551	6,122	493	497	526	499	414
실습장 수(개소)	5,434	4,115	296	296	250	276	2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생의 현장실습과정 중 19건의 부상 사고와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2025년 5월에는 경남 합천군 양돈장에서 장기현장실습 중이던 한농대 재학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⁵⁾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생 안전사고 현황]

연도 (건수)	연번	성명	학부	실습장명	시도	재해정도	재해·부상 내용
2021년 (5건)	1	이○○	원예	○○○	경기	부상	손가락 베임
	2	추○○	원예	○○○	충북	부상	갈비뼈 부상
	3	권○○	축산	○○○	전북	부상	무릎 연골 파열
	4	김○○	축산	○○○	전남	부상	팔 골절
	5	김○○	원예	○○○	충남	부상	발바닥 근막염증
2022년 (8건)	6	최○○	축산	○○○	경기	부상	발 피부 열상
	7	박○○	농수산융합	○○○	충북	부상	정강이 타박상
	8	이○○	원예	○○○	경기	부상	발목인대 부분파열

5) 축산경제신문, “실습 중 참사... 한농대 또 사망 사고”, 2025-05-23

연도 (건수)	연번	성명	학부	실습장명	시도	재해정도	재해·부상 내용
	9	박○○	축산	○○○	전남	부상	허리 부상
	10	오○○	축산	○○○	경북	부상	팔, 가슴 타박상
	11	성○○	원예	○○○	전남	부상	손가락 골절
	12	안○○	원예	○○○	경기	사망	농기계 끼임
	13	이○○	농수산융합	○○○	전남	부상	소음으로 이명
2023년 (1건)	14	이○○	축산	○○○	경기	부상	낙상
2024년 (2건)	15	윤○○	축산	○○○	전남	부상	이마 피부 열상
	16	이○○	축산	○○○	경기	부상	팔 골절
2025년 (5건)	17	김○○	축산	○○○	경남	사망	화재
	18	황○○	원예	○○○	충남	부상	발목 인대 파열
	19	김○○	축산	○○○	경기	부상	발목 인대 염좌
	20	이○○	축산	○○○	충남	부상	손가락 골절
	21	권○○	원예	○○○	충남	부상	허리(디스크) 통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관련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 5월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같은 해 8월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안)을 마련하고,⁶⁾ 11월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현장실습장에서 사고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실습장(현장교수⁷⁾)은 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지도교수는 교무

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한농대, 2025년 제4차 실습생 안전교육 실시, 2025.10.29.

7)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7조(호칭) 장기현장실습교육 관계자들의 호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현장실습장(이하‘실습장’이라 한다)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자: 현장교수

처에 사고 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이후에는 ①응급조치 및 진료여부, ②보험처리(대학 종합보험/실습장 산재보험/개인 의료보험 등), ③진단결과 및 치료경과 등 조치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개정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 운영규정]

제34조의2(현장교수의 안전조치 및 사고신고) ① 현장교수는 총장이 개설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실습 중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농작업 실습 전 실습생에 대한 작업계획 및 농기계·설비·취급물 등의 사전 안전교육 실시
2. 농작업 실습 전 실습생에 대한 안전보호장비 지급 및 실습 중 안전보호구 착용 지도
3. 실습장 내 구급약품 및 소화기 비치
4. 실습생의 과로방지 및 적절한 휴식 제공
5. 그 밖에 총장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관련 사항

② 실습장(현장교수)은 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지도교수는 교무처(상담창구)에 사고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습장(현장교수)은 제2항에 의한 통보 이후 사고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사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실습생은 지도교수 또는 교무처(상담창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해 지도교수 및 교무처(상담창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4.>

그러나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은 대학 내부 자치규범으로 학교 외부에 대한 규범력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⁸⁾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가 신속히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며, 대학은 보고받은 사고 현황·조치 과정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8)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학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실습장 대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은 대학의 설치(제2조), 교육과정(제6조), 교직원(제7조), 학비 지원(제9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서, 현장실습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체계상 대학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22조⁹⁾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 근거하여 학칙 등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타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도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한농대 및 타 대학 현장실습 관련 규정 비교]

구분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교 설립근거법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국립학교 설치령
현장실습 근거	법 제6조 (교과 및 수업)	학칙 제35조 (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시행령 제16조 (학비보조 등)

9)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9조(학교별 규정)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이 고시에 근거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구분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현장실습 주요 내용		곡물, 화훼, 가축 등 농 수축산물 생산 및 관리 방법 등	실습생 전공과 관련된 전통문화 기관에 실무 실습과정 학습	승선실습
현 장 실 습 운 영	규정명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자체규정)	현장실습 운영지침 (자체 규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규정(자체 규정)
	현장실습 기간	8개월	학기제(15주) 계절제(4주, 7주)	4주~15주
	실습생 의무 관련	•제19조(실습생 준수사 항) 안전수칙 준수	•제15조(실습생 의무)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사고 신고 의무	•제17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실습기관의 안전관 리규정 준수, 사고 신고 의무
	교수의 지도 점검	•제25조의2(대학의 현 장지도) 학부장의 이행 실태 점검·지도	•제11조(실습 지도) 지 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 점검 및 방문지도 보고 서 작성	•제12조(현장실습 지도) 지도교수의 현장교육 점 검 및 실습기관 방문지 도 보고서 작성
	실습 기관 관련	•제34조(안전조치) 안전교육 이수, 사고예방 조치	•제13조(실습기관) 실습 생의 보건·위생 및 안 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 관 선정	-
	사고 신고	•제34조의2(안전조치 및 사고신고) 현장교수의 즉시 통보	-	-
안 전 관 리 조 항 및 내 용	보험	•제35조(손해보상보험 가입) •제36조(산업재해보상 보험 등 가입)	•제6조(보험) 상해 보험 및 산재보험	•제15조(협약체결) 상해 보험 가입

※자료: 관련 법령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내부 규정만으로 학내 구성원이 아닌
실습장 대표 등 외부인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학생 안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1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분야의 요양재해율이 전체 산
업 평균(0.65%)보다 높은 0.81%에 이르고,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수)은 1.43%로 전체 평균
1.10%보다 1.3배 높게 나타남(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농업 분야의
대비,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VI, 2024.8.19.).

참고로 개정안은 실습장 대표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의 제재 조치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에 따르면 실습장 선정 취소, 현장교수 해촉 등의 조치가 가능함.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1조(실습장 선정 및 취소) ⑤ 총장은 선정된 실습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실습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34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본 규정 또는 협정서를 위반한 경우

제13조(현장교수 위촉) ④ 총장은 현장교수가 본 규정 및 협정 위반, 실습생의 사망 등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품위 위반 등으로 실습교육이 부적절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14